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208557(본소), 2020가단248494(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2. 5.

판 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D과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2020. 1. 23. 체결된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D에게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1. 23.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11. 20. 접수 F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0. D 명의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날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가액 1,000,000원인 본소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지고, 2020. 1. 23. 원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명의이전등록사항 중 취득일자는 2020. 1. 23.이고, 이전등록구분은 당사자거래이전인 사실인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제3취득자로서 2회에 걸쳐 합계 1,066,474원을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변제공탁하고1) 본소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D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 이전계약이2)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전계약 취소 및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한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1. 15.경 D에게 57,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자동차할부금융), D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2019. 11. 20. 신규등록 후 피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준 사실, 원고가 2019. 11. 20. D에게 4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3) D은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2020.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준 사실, 2020. 1. 23. 무렵 D은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D과 원고 사이의 이전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은 이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 이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D에게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취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중

<별지1>

자동차의 표시

차명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록번호	
사용권지	대구광역시 남구
연식	2019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A01-1-00056-0187-1318
원동기 형식	D4HB
차종	승용 대형
용도	자가용
출처구분	신조차
최초등록일	2019-11-20
최종소유자	

1) 2020. 2. 6. 채권가액 1,000,000원 공탁, 2020. 6. 30. 연체이자 47,474원, 저당권실행비용 19,000원 합계 66,474원 공탁, 총 1,066,474원 공탁

2) 피고는 당사자거래계약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래에서 보듯이 명의이전등록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은 대물변제계약일 것이나, 명의이전등록에 사용된 용어에 맞추어 이전계약으로 표시한다.

3) 그중 36,000,000원은 원고의 처 G 이름으로 D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19. 11.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 저당권설정등록에 이어 설정된 채권가액 47,000,000원인 저당권의 저당권자 G은 원고의 처 G으로 보인다.

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원고는 관련 법리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민법 제364조(제3취득의 변제)의 해석상 제3취득자의 변제로 저당권은 바로 소멸한다는 견해를 취하면 저당권 소멸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른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변동에 해당하게 되고, 제3취득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된다.